

[후보자등록절차] 후보자등록준비-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학력증명서의 발급

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학력증명서의 발급

-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
 -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정규학력에 관한 제출서를 최종학력 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
-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: [다운로드](#)
- 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
 - 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중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, 예비후보자 공약집, 선거벽보, 선거공보,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을 말함(법 제49조④6)

<유의사항>

- ※ ○○대학교를 거쳐 △△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 등에 굳이 ○○대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시 ○○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
- ※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(졸업·수료·중퇴 당시의 학교명임)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
- ※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는 졸업·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. 다만, 개명된 학교명을 ()로 명기하는 것은 가능함
- ※ 정규학력이 있는 사람은 ‘독학’ 또는 ‘무학’으로 기재할 수 없음. 다만,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을 ‘미기재’로

기재할 수 있음

※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 · 제8조에 따라 학점 ·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기재하고자 할 경우,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“○○대학교 ◇◇학사학위 취득”, “○○대학교 ◇◇학사”, “○○대학교 ◇◇학사(◇◇전공)” 등 「고등교육법」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함. 다만, “○○대학교 ◇◇대학 ◇◇학과 졸업”, “○○대학교 ◇◇학과 졸업”, “○○대학교 졸업” 등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 「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

● ‘학력증명서’ 란

- 재학증명서, 재적증명서, 졸업증명서(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), 수료증명서(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) 그 밖에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
-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 번역기관 또는 외국어 번역사 자격증이 있는 개인 번역사가 번역한 내용을 함께 제출

